



## 제 4 장

### 손해배상 사례

## 제 4 장

## 손해배상 사례

### 사례. 16

필리핀 경찰의 한국인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필리핀 교민인 신청인의 모습과 발언을 동의 없이 촬영·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7서울조정449 손해청구  
**신 청 인** 이○○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방송(MBC-TV)  
**중 재 부**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2017. 3. 10.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손해배상)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에서, 필리핀 경찰이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납치, 강도를 저지른 범죄와 관련하여 교민인 신청인과의 인터뷰를 방영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모습과 발언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고, 신청인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목소리 및 신체 일부를 방영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심리 결과, 당사자 간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의견차가 있어 중재부가 양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모두 동의해 확정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필리핀 살인사건, 한국인은 맞았다?』 제하의 보도 (MBC-TV 2017년 2월 12일자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 내 용

▷ 진행자 : 지난해 10월 필리핀에서 한국인 사업가 지 모 씨가 납치됐습니다. 범인들은 지 씨 가족에게 1억 2천만 원을 요구했고, 몸값을 줬지만 지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 필리핀 전현직 경찰이 포함된 범인 일당은 납치 당일 경찰청 주차장에서 지 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은 화장장에서 소각해 화장실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연루된 충격적인 범죄에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 씨 가족에게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했지만, 경찰청장을 유임시키고 사건 주모자는 여전히 체포되지 않는 등 필리핀 당국의 사건 처리는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심지어 델라로사 경찰청장은 지 씨의 죽음에 한국인 조폭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필리핀 경찰의 범죄 사실을 몰타기 하려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핀에서는 경찰 등 부패한 공권력이 결탁해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몰고 금품을 뜯어내는 이른바 ‘셋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종종 범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인 관광객 3명이 마약범으로 몰려 700만 원을 갈취당하는가 하면, 이달 초에는 30대 한국인 여성이 현지인을 살해 협박했다는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현지 교민 20만 명에 한국인 관광객 1백만 명. 무법천지 필리핀에서 반복되는 한국인 대상 범죄,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중략>

그런데 지난해 12월 30일 필리핀 경찰 7명이 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당시 CCTV 영상입니다.

어둑어둑해질 무렵 승합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섭니다.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 집에 들어가더니 잠시 후 한국인들을 체포해 나옵니다. 한 한국인이 도망가자 권총을 뽑아들고 위협하며 쫓아갑니다. 끌려가지 않기 위해 저항해 보지만 여러 명의 힘을 당하지 못하고 강제로 차에 태워집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경비가 왔지만 경찰인 걸 알고는 그냥 돌아갑니다. 이들은 돈, 신발, 가방, 금붙이와 스피커까지 빼앗았습니다. 이들은 박씨 일행을 경찰서로 데려가 유치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박씨 일행은 아는 한국인들에게 약 700만 원을 빌려 경찰에게 줬고 불법 구금 8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 일 직후 박씨 일행은 서둘러 귀국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그냥 묻히는 듯했지만 지○○씨 살인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함께 부각됐습니다.

델라로사 필리핀 경찰청장은 사건 발생 한 달이 넘게 지난 지난 1일 문제의 경찰관들을 찾아가 거친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 ▷ 델라로사/필리핀 경찰청장 : “한 짓이 너무 심각하고 정말 창피하다. XX. 이번이 몇 번째야. 한국인을 몇 번째 체포한 거야?”

그리고는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합을 줍니다.

- ▷ 델라로사/필리핀 경찰청장 : “엎드려. 한 손을 다른 손 위에 올려”

이 와중에도 한 경찰관은 잘못된 게 없다고 변명을 합니다.

- ▷ 앙헬레스 경찰관 : “적법한 단속이긴 했는데.”

- ▷ 델라로사/필리핀 경찰청장 : “적법했다고? 그럼 돈은 왜 빼앗았어? (한국) 관광객들을 왜 때렸어? 세상에 이런 ‘적법’이 어딤어?”

하루 뒤 2580 취재진이 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곳의 책임자에게 경찰청장에게 공개 망신을 당한 해당 경찰관들은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

- ▷ 롤란드 도로자 수사팀장/양헬레스 경찰서 : “돈을 빼앗은 7명의 경찰들은 경찰 본부 안에서만 근무합니다. 그들은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관광객을 납치해 강도질을 했는데도 내근을 하도록 조치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교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 ▷ 필리핀 양헬레스 교민 : “그게 말이 됩니까? 범죄를 저질렀으면 체포를 해서 감옥에 보내야지 ‘이 나쁜 놈아’라고 소리 지르고 카메라 앞에서 소리 지르고, 엎드려뺨쳐 시켜서 팔굽혀펴기 시키고, 코미디쇼. 그냥 쇼를 하는 거죠. 쇼. 보여주기 위한 쇼.”

필리핀에서 한국인의 별명은 ‘마사랍 코리아’입니다. 마사랍은 ‘맛있다’는 뜻의 필리핀어입니다. 한국인에게 돈을 뜯어내기 그만큼 쉽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ATM기로 불리기도 합니다.

- ▷ 롤란드 도로자 수사팀장/양헬레스 경찰서 : “한국 사람들은 여기 휴가 와서 돈을 많이 씁니다. 바에 가면 돈을 나눠주는 게 기본입니다. 사실 모두에게 돈을 주는 것 같아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필리핀에 온 한국 관광객들은 대개 돈을 잘 씁니다. 이 때문에 한국인은 모두 부자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인들은 정상적인 방법보다 뒷돈을 주고 해결해 왔습니다. 이를 본 부패한 경찰과 공무원들이 한국인을 상대로 문제를 만들어 돈벌이로 삼는 겁니다. 이렇게 경찰이나 공무원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체포해 겁을 주고 돈을 빼앗는 범죄를 필리핀에선 ‘셋업’이라고 부릅니다. <후략>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 주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에 대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이유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3. 27.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동의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 사례. 17

연예인의 악플 대응을 비난한 배우를 언급하면서 신청인의 사진을 해당 배우의 사진으로 잘못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b>사 건</b>	2017경기조정60 손배청구
<b>신 청 인</b>	신○○
<b>피신청인</b>	주식회사 경인일보(인터넷 경인일보)
<b>중 재 부</b>	경기중재부
<b>접 수 일</b>	2017. 3. 21.
<b>처리결과</b>	취하(손해배상)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개그우먼 이○○가 악플러들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이에 대해 모 배우가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했다고 하면서 해당 배우의 사진을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배우와 전혀 관련 없는 신청인의 사진이 잘못 게재되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손해배상 1,000,000원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한편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가 뉴스통신사의 기사를 전재한 것에 불과하나 이를 최종 보도한 언론사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심리 기일 이전에 피해에 대한 금전 지급을 약속하여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 조정대상보도

- 『배우 온○○, ‘악플 강경대응’ 이○○ 공개비판...“당신이 성희롱한 男연예인은?”』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인일보 2017년 3월 19일자 연예면)
- 내 용  
배우 온○○가 개그우먼 이○○를 공개 비판했다.

19일 온○○는 ‘이○○ 100억 줘도 너네랑 안해 악플러 법적 대응 예고’기사에 “댓글로 조롱당하니까 기분나쁜가요? 당신이 공개석상에서 성희롱한 남자연예인들 어땠을까요?”라며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했다.

그는 “대놓고 화낼수도 없게 만드는 자리에서 씩씩히 웃고 넘어갔을 그 상황. 이미 고소 열 번은 당하고도 남았을 일인데 부끄러운줄이나 아시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가 방송을 통해 남자 연예인들에게 했던 과도한 스킨십과 성적인 언행을 문제삼은 것.

한편, 이○○는 지난 18일 자신을 향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법적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나는 촬영비 두둑이 챙겨줘도 절대 저탄 돼지X이랑 안 한다’, ‘누군가 자본주의의 끝을 묻거든 고개를 들어 슬리피를 보게 하라’ 등 자신을 향한 악플을 캡처해 공개하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 기대해도 좋아요”라고 입장을 밝혔다.

### 조정신청취지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취하

### 취하 후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600,000원 지급

## 사례. 18

취업난에 비싼 졸업앨범 대신 기념사진으로 대체한다는 보도를 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들의 단체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b>사 건</b>	2017서울조정948 손해청구
<b>신 청 인</b>	1.정○○ 2.조○○
<b>피신청인</b>	이데일리 주식회사(인터넷 이데일리)
<b>중 재 부</b>	서울제1중재부
<b>접 수 일</b>	2017. 5. 26.
<b>처리결과</b>	조정성립(손해배상)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최근 대학생들이 비용 등 여러가지 이유로 졸업앨범 대신 ‘우정화보’를 찍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들의 ‘우정화보’ 사진을 게재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촬영 및 보도에 동의한 사실이 없어 초상권이 침해되었고, 부정적인 취지의 기사에 게재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각 1,5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보도 이전 신청인의 사전 동의가 없었던 점을 인정하여 손해 배상하고, 신청인이 포털 등 해당 기사가 게재된 사이트의 URL을 제공하면 피신청인이 각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동기도 없고, 돈도 없고…졸업앨범 대신 우정화보』 제하의 기사 (인터넷 이데일리 2017년 5월 25일자 사회면)
- 내 용  
 “생애 한 번뿐이긴 하지만 메이크업이랑 옷 구입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너무 부담이 돼서요…”

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 이모(24·여)씨는 22일 “졸업 사진 대신 과 동기들과 자체적으로 기념 사진을 찍을 생각”이라며 “졸업 가운과 학사모는 학교에서 무료로 빌리고 촬영은 사진을 공부하는 후배에게 맡길 예정”이라고 했다. 이씨는 “대학 생활 추억이 깃든 동아리방이나 캠퍼스 곳곳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는 게 훨씬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했다.

“인턴·공시족·졸업유예로 동기들 흩어져 졸업앨범 무의미”

캠퍼스의 추억을 담은 졸업앨범을 포기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취업난에 마음이 편치 않은 데다 주머니 사정까지 여의치 않아서다.

서울 소재 대학들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졸업앨범 촬영 시즌을 시작했지만 졸업앨범 구입 비율은 해마다 줄고 있다.

한양대가 졸업앨범 신청자 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5년 2월 1182명에서 지난해에는 933명으로 줄었다. 이번 졸업예정자 4000여명 중 졸업앨범 구매 의사를 밝힌 인원은 990명으로 조사됐다.

졸업예정자 4명 가운데 1명만 졸업앨범을 구매하는 셈이다. 한양대 학생처 관계자는 “최근 2~3년간 졸업앨범을 구입하는 학생들이 꾸준히 줄고 있다”며 “졸업예정자 가운데 졸업을 미루는 인원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강대의 경우 지난해 2월 앨범 신청자수는 691명이었지만 올해 2월에는 500명에 그쳤다. 연세대 역시 최근 3년 동안 앨범 신청자가 해마다 300~400명씩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졸업앨범을 담당하는 사진관 관계자는 “평균 70%의 구매율을 보이던 고려대도 올 들어 60%대로 줄었다”며 “졸업 앨범이 학창 시절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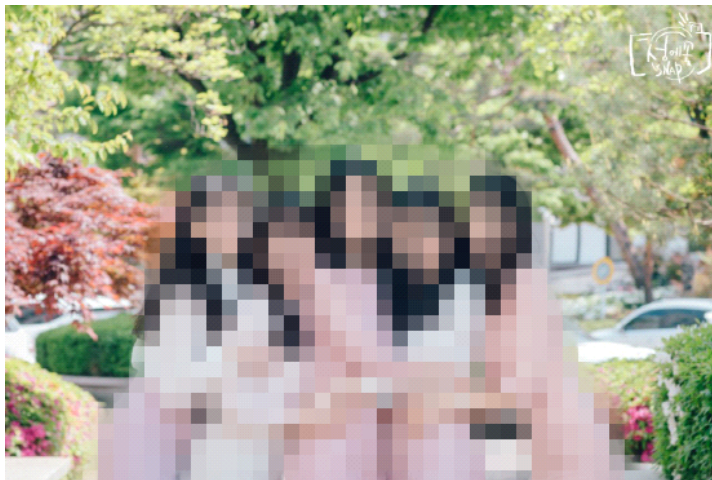
5분 찍는데 수십 만원... 졸업앨범 대신 우정화보

졸업앨범을 찾는 학생이 갈수록 줄어드는 데는 비싼 비용에 대한 거부감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졸업앨범 가격만 평균 5만~8만원 수준인 데다 정장 구입과 머리단장, 메이크업 비용까지 더해지면 졸업앨범을 찍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40만~50만원을 넘기기 십상이다. 서강대 4학년 강모(25·여)씨는 “5분도 안 되는 사진 촬영을 위해 수십 만원을 들이는 것은 솔직히 사치라고 본다”라며 “부모님은 평생 한 번 찍는 건데 괜찮다고 하시지만 죄송한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취업난에 졸업을 미루거나 인턴·어학 연수 등으로 동기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찍는 졸업앨범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중앙대 4학년 양모(29)씨는 “입학 이후 함께 수업을 듣던 친구들도 지금은 공무원 시험 준비 등 저마다의 이유로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들다”며 “졸업 시점이 같다는 이유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과 찍느니 차라리 안 찍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틀에 박힌 졸업앨범 대신 친한 친구들과 자유로운 복장으로 ‘졸업용 우정 화보’ 촬영이 인기를 끌고 있다.



오는 8월 코스모스 졸업을 앞둔 김모(24·여)씨는 “학과 친구들과 몇 명과 돈을 모아 스냅 업체에 촬영을 맡길 것”이라며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학창 시절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스냅사진을 찍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스냅 촬영 전문 업체 관계자는 “최근 들어 오는 예약의 절반 이상이 졸업 사진 관련 문의”라며 “1인당 2만~5만원이면 충분해 학생들이 많이 찾는 편”이라고 전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취업난에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는 심리적 여유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 계좌로 2017년 6월 15일(목)까지 1인당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블로그나 카페 등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을 포함한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조정 대상 보도사진이 게재된 경우, 신청인은 2017년 6월 15일(목)까지 피신청인에게 게시물의 URL을 통보하고, 피신청인은 2017년 6월 22일(목)까지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관리자에게 위 조정대상 보도사진이 삭제되도록 요청한다.
3.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에 대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6. 5.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각 500,000원 지급

## 사례. 19

서울광장 쿼어축제 현장에서 신청인이 촬영한 사진을 무단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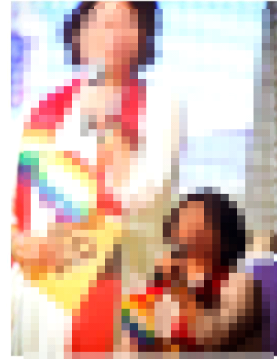
<b>사 건</b>	2017서울조정1263 · 2017서울조정1264(병합) 각 손해청구
<b>신 청 인</b>	김○○
<b>피신청인</b>	국민일보 주식회사(인터넷 국민일보, 국민일보)
<b>중 재 부</b>	서울제8중재부
<b>접 수 일</b>	2017. 7. 23.
<b>처리결과</b>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손해배상,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서울 쿼어축제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모 목사에 대해 보도하면서 서울 쿼어축제에 참석한 해당 목사의 사진 등을 '페이스북 캡처'라는 설명과 함께 게재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사진은 사진작가인 신청인이 촬영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동의도 구하지 않고 기사에 사용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며 1,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유가치인 점, 공개된 페이스북 게시물이라도 신청인이 보도까지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배상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공적인 목적에서 보도가 이루어졌고 사진의 출처를 표기했으며, 공개된 내용을 캡처하여 보도하는 것은 일반적 관행이라고 주장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중재부는 신청인에게 500,000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정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하였다.

## 조정대상보도1

- 『“임○○ 목사, 잘못된 신론 구원론 갖고 있다”』(인터넷 국민일보 2017년 7월 21일자 종교면)
- 내 용



## 조정대상보도2

- 『“임○○ 목사, 반성경적 주장...정통교회와 신학 공격”』(국민일보 2017년 7월 24자 22면)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 주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이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8. 18.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피신청인 이의신청

## 사례. 20

여자 혼자 사는 집의 초인종을 누르는 여장남자를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b>사 건</b>	2017서울조정1275 · 1276 정정 · 손해청구
<b>신 청 인</b>	이○○
<b>피신청인</b>	주식회사 아시아경제(아시아경제닷컴)
<b>중 재 부</b>	서울제3중재부
<b>접 수 일</b>	2017. 7. 27.
<b>처리결과</b>	취하(정정), 조정성립(손해배상)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여자가 혼자 사는 오피스텔에 여장을 한 채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려고 한 남성이 있다는 제보와 함께 CCTV 영상 캡처 화면을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보도 속의 CCTV 영상 캡처 화면 인물인 신청인은 해당 영상은 오피스텔 침입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범인으로 얼굴이 공개되어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관련 없는 보도에 모자이크 등 처리 없이 초상이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소송보다는 조정절차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중재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10,000,000만원의 손해배상으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1

-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초인종 누르며 문 열리는 여장 남자, ‘섬뜩’』 제하의 기사 (아시아 경제닷컴 2017년 7월 21일자 사회면)

## ■ 내 용

여자 혼자 사는 오피스텔서 여장을 한 채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라는 남성이 있다는 제보가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있다.

지난 19일, 인천 남구 주안동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익명의 한 여성은 자신의 집에 여장을 한 남성이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려한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여성이 올린 영상을 보면 한 눈에 봐도 건장한 남성이 여장을 한 채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은 초인종을 누른 뒤 문이 열리지 않자 연신 초인종을 반복해 누르고 손잡이를 잡은 채 주변을 둘러보는 등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제보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남성이 자리를 뜬 뒤 곧장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직 범인을 검거하진 못한 상태라고 전해졌다.

여성은 “너무 놀라서 대답도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직 잡지 못했다”며 “제발 이 사연을 보고 범인을 꼭 잡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변의 도움을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더럽다 어떻게 저런 짓을 하고 다니냐”, “세상에 미친놈들이 너무 많아 무서워서 못 살겠다”, “모르는 사람이 초인종 누르면 절대 열어주지 말아야 한다” 등 섬뜩한 제보에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여성이 제보한 해당 게시물은 조회 수 4천부를 돌파하고 공유 200회를 넘어서며 네티즌들 사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 조정대상보도2

- 『물카 찍고 초인종 누르고...‘여장남자’ 잦은 출현, 취향과 범죄 사이』 제하의 기사 (아시아 경제닷컴 2017년 7월 25일자 사회면)

## ■ 내 용

지난 19일 여장을 한 남성이 여성의 집 초인종을 누른다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이 SNS에 유포됐다. 동영상에는 가발을 쓰고 짧은 치마를 입은 남성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19일에는 서울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용 원피스를 입은 남성이 몰래카메라를 찍다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범행 한 달 만인 지난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2013년에는 30대 남성이 여장을 하고 서울 모 대학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 남성은 2010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369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 여장을 한 남성이 벌이는 사건 사고가 잇따르면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여장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장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여장을 했을 때 범행이 보다 수월하기 때문이다. 여장은 범행 타깃의 경계심을 낮춘다. 여장 범죄 가운데 몰래카메라 촬영 등 여성을 표적으로 한 범행이 많은 까닭이다. 또한 여장은 성별을 감추는 변장술로도 이용된다.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를 피하고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다.

잇단 여장 범죄로 여성들의 불안감은 늘어나지만, 여장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만일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만 단순 여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여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다. 2015년 여장을 하고 초등학교 인근 정자에 앉아있던 남성은 법원으로부터 경범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경범죄 처벌법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차림새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일각에선 여장이라는 취향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성의 복장을 입은 취향을 가진 ‘크로스 드레서’ 때문이다. 이들은 성소수자의 일부로 분류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4월 여장을 하고 여자고등학교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여장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해방감을 느꼈다”며 “평소 여장이 취미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화장실 칸 안을 엿보거나 음란 행위를 시도하지는 않았고 범죄 전력도 없다고 전했다.

한편 여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여성 옷차림이라고 하더라도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거나 긴 머리,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경우에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시아경제닷컴(<http://www.asiae.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가. 제목 :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초인종 누르며 문 열라는 여장남자’ 허위정보로 밝혀져..

나. 본문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7월 21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에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초인종 누르며 문 열라는 여장 남자,” ‘섬뜩’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7월 25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에 “몰카 찍고 초인종 누르고... ‘여장남자’ 잦은 출현, 취향과 범죄사이”라는 제목으로 차림새만으론 처벌불가... ‘여장’ 자체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는데, 이 불쾌감 어찌지? 라고 각각 사실과 무관한 제보 보도로 그대로 반영했는데..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여장남자는 그 날 인천 주안이 아니라 작년 8월 10일에 강릉에 놀러갔었고 오피스텔 CCTV가 아닌 마사지 가게 CCTV로 찍혔던 영상을 조작해 허위 유포로 인해 여성들에게 사회적인 불안감을 조성하게 해 한 인격과 존중을 무시한 채 초상권과 명예훼손죄라는 범죄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처리결과

취하(정정), 조정성립(손배)

###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아시아경제는 신청인에게 2017. 8. 31.(목) 18:00까지 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와 관련된 나머지 신청을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8. 25.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0,000,000원 지급

## 사례. 21

집안일 부담 등으로 암 전문 요양병원에 여성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환자인 신청인의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 사 건** 2017서울조정1799, 2017서울조정1800(병합) 각 손배청구  
**신 청 인** 유○○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중 재 부**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2017. 9. 29.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손해배상)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집안일 부담 등으로 암 전문 요양병원에 ‘사회적 입원’중인 여성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암환자인 신청인의 신상(실명, 나이) 및 암 경력 등 개인정보를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보도하여 성명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 10,000,000만원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은 실명보도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여기고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았던 점을 인정하며 유감을 표명하였고, 중재부가 손해배상 액수를 일부 조정할 것을 권유하자 피신청인이 블로그 등에 게재된 복제기사의 노출·검색을 차단 조치해준다는 전제 하에 신청인이 중재부의 권유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내 몸도 힘든데 아내엄마 노릇은 어떻게… 병원이 낫죠”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7년 7월 14일자 10면, 온라인 중앙일보 2017년 7월 14일자 사회-복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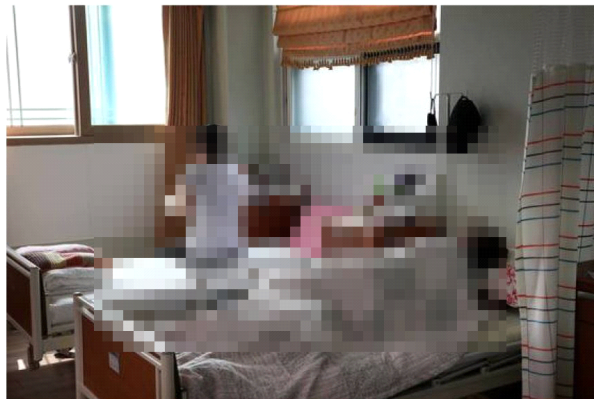
## ■ 내 용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도 ○○시 ○○요양병원, 3층 건물 80병상에 암 환자가 거의 다 찼다. 대부분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들이라 간병인은 필요 없다.

병원 복도에는 창이 크게 나 있고 여기저기에 화분이 놓였다. 창틀에 운동화가 있고, 빨래건조대에 수건·속옷 등이 널려있었다. 바닥에 마루가 깔려 있어 신발을 벗고 들어간다. 마치 가정집 같은 분위기다. 침대 옆에는 서랍장이 있고 책·영양제 등 소지품이 가득했다.

4인 병실에 입원 중인 유○○(○○)씨는 기자가 들어가자 마치 집에 손님을 들이듯 “차 한잔 하실래요?”라고 물었다. 유씨는 ○○암 환자로 지난해 8월 입원했다. 부친상이 났을 때와 명절에 잠깐 퇴원했다가 돌아왔다.

유씨는 지난 2월 방사선 치료가 끝났다. 하지만 유씨는 “집에 가면 가족이 힘들어하고, 혼자서 밥 챙겨 먹고 집안일까지 하는 게 힘들어 여기에 계속 있다”며 “챙겨 주는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병원이 집보다 편안한 공간이 됐다는 의미다. <후략>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아래 신청인 계좌로 2017. 10. 27.(금) 18:00까지 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2017. 10. 27.(금) 18:00부터 중앙일보 전자판에서 신청인 관련 내용 및 사진이 더 이상 노출·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를 그대로 전제한 ○○○기자의 개인 블로그 게시글에서 신청인 관련 내용 및 사진이 2017. 10. 27.(금) 18:00부터 더 이상 노출·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포털 사이트나 다른 인터넷 사이트(블로그 및 페이스북 등)에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및 사진이 게재 및 확산된 경우, 신청인은 해당 URL을 특정하여 URL 목록을 피신청인에게 2017. 10. 27.(금) 18:00까지 전달하고 피신청인은 해당 사이트의 관리자에게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의 삭제를 2017. 11. 3.(금) 18:00까지 요청한다.
5.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10. 20.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